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603

발의연월일: 2022. 5. 13.

발 의 자:이종성・구자근・김예지

김형동 • 박대수 • 박형수

정우택 · 정운천 · 조명희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국내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편의 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 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편의
	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
	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
	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
	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
	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
	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